

의안번호	제 751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1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발 의 자 : 이의영,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장선배, 허창원
윤남진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함.
- 나. 법령 개정, 행정기구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개정
 - (현행)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 (개정)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 3조)
 -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포함
 - 위촉직 위원에 남·여 청소년 포함
- 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62호
- 다. 협의 : 여성가족정책관
-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 충청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여 청소년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사 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의안에 따른 비용발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